##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 870 제안년월일 : 2011년 11월 일 제 안 자 : 정현희·신성봉·이효상·

황세영.김지근 의원(5명)

#### 1. 제안이유

가.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 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 및 제5조)
- 나.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규정(안 제7조)
- 다.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(안 제8조)
- 라. 센터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.감독 (안 제9조)
- 마.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폐쇄 규정(안 제10조)
- 바. 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규정(안 제11조)

#### 3. 근거법령

가. 아동복지법 제4조

나.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1호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 나. 입법예고 사항 : 해당없음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1. "지역아동센터"(이하 "센터"라 한다)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렇자에게 사고되고 선생이 마침되었다.

  - 구청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.
    2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   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  - "지역아동센터 종사자"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, 교육, 양육, 치료,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5. "사업"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임·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,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.

제4조(사업주체)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한다.
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
- 2.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수립 3.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

제6조(이용의 대상)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.

- 1.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. 지역 내 빈곤·학대·방임 가정의 아동
- 3. 한부모・조손(祖孫)・소년소녀・다문화 가정의 아동
- 4. 장애 부모를 두어 방임·방치의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 5. 구청장 또는 거주지(주소지) 동장·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아동

제7조(사업)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작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
  1.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
  2.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
  3.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
  4.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
  5.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
  6. 아동 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
  7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사업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. 센터 종사자 인건비·처우개선비·교육훈련비

- 3. 도서 · 교재 · 교구 등의 구입 · 개발에 따른 경비

- 4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.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

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의 폐쇄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을 환수하거나 시설을 폐쇄 할 수 있다.
1.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

- 3.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와 설치신고가 취소된 때 4.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11조(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)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(참고사항)

####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현황

○ 전국 자치단체 : 30개소

총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대전	광주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충남	충북	강원	경기
계	3	2	1	1	3	1	3	1	4	2	2	1	2	4
광역	2	1	1	0	1	0	1	0	0	1	1	1	1	1
기초	1	1	0	1	2	1	2	1	4	1	1	0	1	3

#### ○ 울산

• 울산광역시 : 환경복지위원회 계류중

-발의일시 : 2011. 9. 7

-발의의원 : 류경민의원 외 8인 -계류사유 : 환경복지위원회 미개최 • 북구 : 2010. 12.13 제정

####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 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 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

- 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- 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국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
-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- 1. 아동가정지원사업: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, 가정, 지역주민에게 상담,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
- 2. 아동주간보호사업: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
- 3. 아동전문상담사업: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,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
- 4. 학대아동보호사업: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- 5. 공동생활가정사업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
- 6.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: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

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- 2.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
- 3. 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- 4.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- 5.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
- 6.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
- 7.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- 8.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·육성에 필요한 비용

#### 전부개정 아동복지법

#### [ 전부개정 2011.8.4 법률 제11002호 시행일 2012.8.5 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복지"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 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보호대상아동"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- 5. "지원대상이동"이란 이동이 조회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·경제적·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
- 6. "가정위탁"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아동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피해아동"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- 9. "아동복지전담기관"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(이하 "아동보호전문기관"이라 한다)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(이하 "가정위탁지원센터"라 한다)를 말한다.
- 10. "아동복지시설"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- 11. "아동복지시설 종사자"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·지도·치료·양육,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

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

제7조(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

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(이하 "기

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- 2.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- 4. 재원조달방안
- 5.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.
-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각각 둔다.

- 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- 4.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- 5.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- 6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※현재까지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보육정책심의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음

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 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
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

- 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- 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- 1. 아동가정지원사업: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, 가정, 지역주민에게 상담,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
- 2. 아동주간보호사업: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
- 3. 아동전문상담사업: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,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
- 4. 학대아동보호사업: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- 5. 공동생활가정사업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
- 6.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: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 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- 2.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
- 3. 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- 4.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- 5.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
- 6.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
- 7.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- 8.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·육성에 필요한 비용

제61조(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

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, 대리양육자 및

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 1.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
- 3.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 를 한 경우
- 4.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
- 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#### 사회복지사업법

제40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폐쇄 등) ① 보건복지 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
- 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
- 3.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
- 4.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- 5.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·운영 하였을 때
- 6.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 하지 아니하였을 때
- 7.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하였을 때
- 8.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·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※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3 참조

# 의안심사보고서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

#### 2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일 자 : 2011. 11. 14(월) 나. 제 안 자 : 정현희 의원 외 4명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1. 16(수)

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1. 22(화), 2011. 11. 25(금)

#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정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(안 제 3조 및 제5조)
-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(안 제7조)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(안 제8조) 센터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.감독 (안 제9조)

-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폐쇄 규정(안 제10조) 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)

## 4. 근거법령

-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1호

-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영호)
 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현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  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울산 북구를 비롯하여 전국 3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,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할 것으로 에사되
  - 에상됨.

     우리구에서도 국·시비 보조금을 받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8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314백만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57백만원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
  - 다만, 현재까지는 아동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보건복지 부와 광역시로부터 국·시비를 배분 받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비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○ 수정사유

-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본래의 목적 외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,
   사업비의 지원내역은 보건복지부 국・시비 보조금 운용지침에 의해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역 위주로 수정하였음.

## <u>7. 수정내용</u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 <u>(사업주체)</u>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	제4조 <u>(사업자의 준수 등)</u> ① 센터 사업을
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	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
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	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 복지
하여야 한다.	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
	설비를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
	<u>타 복지사업, 타 기관, 개인용도 등과</u>
	공동 사용할 수 없다.
제8조(사업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. 센터 종사자 인건비·처우개선비· 교육훈련비 3. 도서·교재·교구 등의 구입·개발에 따른 경비 4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.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	제8조(사업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센터의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2. 센터의 운영관리비 3. 센터의 프로그램 학습경비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비